

입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5. 12.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원예산업과)

1. 개정이유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미부착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는 경우 1회 위반시 검사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토록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확인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 중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에서 1회는 “검사정지 6개월”로 하고,
2회는 “지정취소”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5항 관련)				[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5항 관련)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3.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3. 법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지정 취소			3. 법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u>검사 정지</u> 6개월	<u>지정 취소</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